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 사 보 고 서**

2013. 5. 3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

## 가. 제안이유

지구의 환경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자연현상으로 발생되는 태풍, 폭우로 인하여 마포구 관내 산지에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사방공사와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를 실시하여 산지와 인접한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1)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의무, 해촉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내지 제8조)
  - 2) 위원회의 운영, 심의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9조 내지 제15조)
  - 3) 위원회의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16조 내지 제18조)

### 3. 검토보고 (김은모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2012. 8. 23.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2013. 3. 28.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관내 산사태 위험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로 산(山)과 인접한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 조례 구성 내용 >

- 1)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목적) ~ 제18조(운영세칙)과 부칙으로 구성
- 2) 안 제1조(목적)에서는 이 조례의 근거법령과 마포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3) 안 제2조(설치)는 구청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마포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함
- 4) 안 제3조(기능)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기능으로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및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안전대책과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규정
- 5) 안 제4조(구성)는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공무원,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재난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장이 하도록 함

- 6) 안 제5조(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 사례반 연임할 수 있고,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함
- 7) 제6조(위원의 의무)는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고, 간사는 연 1회 회의출석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이 활동 중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8) 제7조(위원의 제척 · 회피 · 기피)는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와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 · 지상권자 · 지역권자 ·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제척 · 회피하여야 하며, 이해당사자로부터 기피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의결로 결정하고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 9) 안 제8조(위원의 해촉)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해촉 할 수 있도록 함
- 10) 안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11조(상정안건 의결), 제12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는 일반적인 위원회 회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 11) 안 제13조(의견청취)는 위원장은 안건 심의 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12) 안 제14조(현지조사)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이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 13) 안 제15조(회의록)는 간사는 위원회 회의시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심의위원, 심의결과(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안건)를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도록 함
- 14) 안 16조(위원회의 수당 등)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15) 안 제17조(서식) 위원회에 상정하는 심의안건 및 결과보고서 등은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의함
- 16) 안 제17조(운영세칙)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검토의견으로는

최근 도시에서도 지구 온난화 현상 등으로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처럼 예상하지 못한 폭우가 발생하여 산(山)과 인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2012. 8. 20. 산림청에서 각 자치구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도록 통보한 바, 이에 우리 구에서도 관내 산(山)(상암산 외 5개소 / 51 ha)과 산사태 취약지역(창전동 35-25 / 2,770㎡ 외 3개소)에 산림내 수목식재, 위험 절개지 석축쌓기 및 계류에 대한 복원공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정비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구 관내에는 아현뉴타운 사업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많이 산재하고 있고 공사장 절개지 등 공사장 주변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은 시기 적절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한 조례로서 2013. 2. 21. ~ 3. 13.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

또한 이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마포구 관내 산사태 취약 지역과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산사태 위험으로부터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 관련부서에서 유의할 사항은

- 1) 마포구는 도시지역의 특성상 산(山)과 주택이 바로 인접해 있는 거주지가 있는 지역으로, 특히 산사태 취약지역에 있는 일부 건축물 중에는 건축법상 산(山)과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축대를 석축대신 블록으로 쌓는 등 위험한 건축물이 산재하고 있어, 만일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먼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및 건축허가 조건 미이행 건축물 현황을 파악한 후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건축 허가조건대로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위험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 마포구 관내 산(山)의 임야, 공원, 녹지 등 숲 가꾸기 사업 관련부서에서도 산림 계획 초기시부터 산(山)의 지반을 약하게 하는 수종은 피하여 식재를 하고, 사후에도 산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 수목에 대한 제거 및 토지 지반 강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